

울산광역시 동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690호 2026. 10. 1.(목)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
-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2
-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9

고 시

- 동구 D-0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고시 101

공 고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102

ਸਿੱਖ								
------	--	--	--	--	--	--	--	--

편집 : 기획예산실(☎ 209-3047, 행정 3047)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947호

「울산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규제 개선 권고(2026. 3. 12.)”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정의 규정 개정(안 제2조):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거주지 제한 조항 삭제
- 나. 부칙: 연관된 타 조례 일괄개정 및 시행일 지정
- 다. 조례 오기 정정 및 법령 현행화 등 정비

3. 근거법규

- 가. 「병역법」 제82조의3(병역명문가의 선정 등)
- 나. 「병역법」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 다.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 1) 주소: (44021)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동구청 안전총괄과)
- 2) 팩스: 052-209-3669
- 3) 전자우편: wjlee41@korea.kr

6.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총괄과(전화: 052-209-3683)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http://www.donggu.ulsan.kr>) 「동구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가”를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로, “사용료 등의”를 “사용료”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사항 등”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존경 받을”을 “존경받을”로, “홍보하여야”를 “홍보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예우대상자 가족(예우대상자를)”을 “예우대상자의 가족(예우대상자와)”로, “위탁한”을 “위탁하여 운영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예우대상자의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6조 중 “자료의”를 “자료”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울산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①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가문을 말한다.	
②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
			-----	-----
			-----	-----
			-----	노력해야
			-----	---
	② 구청장은 구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u>사용료</u>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 <u>사용료</u> -----
			-----	-----
			-----	-----
			-----	노력해야 -----.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구청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예우대상자를 동반한 경우에 한한다)이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요청)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사항

② -----

----- 존경받을 -----
--- 홍보해야 ---.

제5조(지원) ① -----
--- 예우대상자의 가족(예우대상자와 -----
----- 위탁하여
운영하는 -----

-----.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예우대상자의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6조(협조요청) -----

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
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자료 -
-----.

<삭 제>

<삭 제>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951호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개정 이유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하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은 경우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7조2)
- 나. 개정된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로 변경(안 별지1)
- 다.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제4조의2, 제6조제2항)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1】

4. 근거법규: 【붙임2】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피해사실확인서)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1일까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동구청 안전총괄과
- 2) 팩스번호: 052) 209-3669
- 3) 전자우편(E-mail): kp1722@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안전총괄과(전화 (052)209-36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http://www.donggu.ulsan.kr>) [동구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을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을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이의”를 “재난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 결정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을 “지원은”으로, “구청장이 정한다”를 “결정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계안정”을 “생계 안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규정””을 ““영””으로,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을 “생활안정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레비,”를 “장레비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 기준”을 “등의 기준”으로, “규정 제4조제2항”을 “영 제4조제2항”으로, “피해수습 지원”을 “피해수습지원”으로,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를 “고려하여 정한다”로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를 “제1항제4

호에 따른”으로, “같이 할 수 있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장례비 :”를 “장례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치료비 :”를 “치료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장례비 및 치료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의2 중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의3의 제목 “(구상에 따른 책임)”을 “(구상청구에 대한 이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우 일반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을 “경우에는 그 청구에 이의를 제기”로,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을 “이미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지급한”으로 한다.

제5조 중 “지급하거나,”를 “지급하거나”로, “상응하는”을 “상당하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장례비·치료비지원”을 “장례비·치료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없어진”을 “종료된”으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미리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제6항 중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를 “직접 조사한 결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인정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9.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 본문 중 “금융회사 등”을 “금융회사등”으로,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를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다르게 할”을 “달리할”로 한다.

제9조 중 “및”을 “또는”으로, “돌려받아야”를 “환수해야”로 한다.

제10조 중 “재원(財源)”을 “재원”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그 밖의 주요사항)”을 “(그 밖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금 또는 물품”을 “자금·물품”으로,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를 “비용의 부담기준 등”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부모 []형제 []기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소유자(미거주), []세입자, []공공임대 세입자		
연락처	이동전화	통신사명 []KT []SKT []LGU+ []KT알뜰폰 []SKT알뜰폰 []LGU+알뜰폰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세대주 []세대원	가족 수	명(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세대원 중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도시가스 사용 여부	[]사용안함, []사용 (가입자명: , 생년월일:)		

3. 피해 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사망·실종, []부상 (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사업피해 ([]휴업, []폐업, []실직)
	확정	[]사망·실종, []부상(부상 정도:),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허가· 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신고	① ② ③ ④
	물량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간접 지원	용자신청 여부	[] [] []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또는 대부 여부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4. 간접지원

※ 간접지원 항목별 지원 여부는 간접지원 실시기관별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자동차 소유 여부	[]예, []아니오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공공주택 임대 신청 희망 여부	[]예, []아니오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위기가족 긴급지원 희망 여부	[]예, []아니오	※ 가족돌봄
심리지원 희망 여부	[]예, []아니오	※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예, []아니오	
과태료 징수 유예 희망 여부	[]예, []아니오	※ 현재 부과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신고, []신고 안함	내용: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신고, []신고 안함	내용:

「울산광역시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3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구청장이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 등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구청장이 용자 등의 간접지원을 위한 자료로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울산광역시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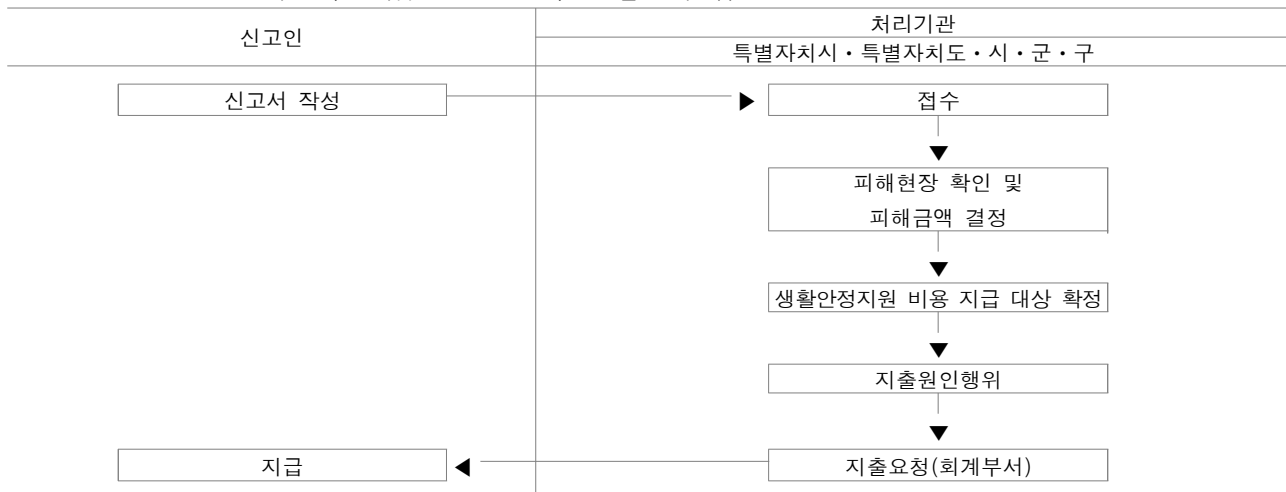
1. 생활안정지원 비용은 위의 신고 내용을 기초로 담당 공무원이 피해사실 확인 및 지급 대상을 확정 후 지급합니다.
2.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에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작성방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 장애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적습니다.
5. 피해자 정보는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되어 간접지원 업무에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생활안정지원 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2]

■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피해사실 [] 확인신청서
[] 확인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발급번호 : 제 -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피 해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 해 내 용	대상	단위	
	피해 규모	재난의 종류	
	피해물의 소재지	피해 일시	
용 도			
제출처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2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발급번호는 지역명을 앞에 쓰고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 : 동구 → 동구-00001
4. 구청장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피해사실확인신청서 작성	→	접 수	→	신청서 검토	→	확인서 발급	→	수 령
신청인		구		구		구		신청인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3]

■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피해자			피해 내용			용도	제출처
	성명	주소	생년 월일	대상	피해 규모	피해물의 소재지		

297mm×210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 -----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 ----- ----- 법 제60조제4항----- ----- -----.
제3조(지원결정) ① (생 략) 1. (생 략)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u>이의</u>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u>지원 결정</u> 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구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	제3조(지원결정)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u>재난</u> <u>의</u> ----- ----- ----- 3. (현행과 같음) ② ----- <u>지원</u> 은 ----- ----- ----- -----

쳐 구청장이 정한다.

③ (생 략)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및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 결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기준) ① -----

----- 생계 안정-----

--.

1. -----

----- “영”

----- 생활안정지원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4. ----- 장례비 및 -----

--

② ----- 등

의 기준 -----

- 영 제4조제2항-----

----- 피해수습지원 -----

----- 고려하여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필요한 일반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필요한 일반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일으킨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4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4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일반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

정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

같다.

1. 장례비: -----

2. 치료비: -----

④ 제3항에 따른 장례비 및 치료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구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의3(구상청구에 대한 이의 등) -

----- 경우에는
그 청구에 이의를 제기-----

----- 이미

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지급한 -----.

제5조(중복지원 금지) -----

---- 지급하거나 -----

----- 상응하는 -----
---- 않는다.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
----- 장례비·
치료비 지원-----

-----.

② -----

----- 별지 제1호서식-----

----- 신고해야 -----.

③ -----

----- 종료된 -----

1. · 2. (생략)

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생략)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 5. (생략)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신고해야 ----.

1. · 2. (현행과 같음)

④ -----

-. 이 경우 미리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

----- 직접 조사한 결과 -----
----- 실시해야 -----.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 인정되면 -----

-----.

1. ~ 5. (현행과 같음)

6. -----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

따른 산림조합

<신 설>

7. (생 략)

<신 설>

<신 설>

8. (생 략)

<신 설>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
건강보험공단

8. (현행 제7호와 같음)

9.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
통신사업자

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1. (현행 제8호와 같음)

제7조의2(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
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
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
다.

제8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6조제6
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
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
주민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

제8조(지급방법) -----

----- 금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9조(환수) 구청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제10조(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회사등-----

-----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
-----.

----- 달리할 -----
-----.

제9조(환수) -----

----- 또는 제5조
에 위반하여 -----

----- 환수해야-----.

제10조(재원의 확보) -----

재원----- 노력해야 ---
-.

제11조(그 밖의 사항) -----

----- 자금·물품-----
----- 비용의 부담기
준 등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서예]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원·복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합니다.

(간략)

신고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배우 [] 합제 [] 기타 ()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출생지출입번호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일자 출생일 모두 공백이면 사망한 사실 인정 필요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출생지출입번호	-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비거주) [] , 세입자 [] , 공동임대 세입자 []	
연락처	이동전화 - - 통신폭탈 [] KT [] LG+ [] 기타	가입자정보
유선전화 () -		가입자정보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주	가족 수
세대원 중	() 고등학교	없
고졸학급 수	() 고졸학급	없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프리카스 사용 여부	사용 [] , 사용·회탈 []	가입자정보: 생년월일:
3. 피해 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치명적(관망:)	
재산 피해	[] 사물·실물, [] 재산(재산 정도:), [] 사물(사물:)	
사물 피해	사물명	① ② ③ ④
	출생지출입번호	① ② ③ ④
	연락·회탈·통신폭탈	① ② ③ ④
	피해 신고	① ② ③ ④
	출생지출입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내용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출생지출입번호	① ② ③ ④

4. 확인사항

출생지출입 신고 여부	신고 []	내용:
사·회·통·탈 신고 여부	신고 []	내용:

「출생장려지원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출생장려지원금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20m x 297mm(표준지(80g/m²) 또는 용지지(80g/m²))

<삭 제>

[별지 1]

■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예]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원·복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합니다.

(복 1복)

신고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배우 [] 합제 [] 기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지출입번호	
2. 피해자 정보 ※ 신고일자 출생일 모두 공백이면 사망한 사실 인정 필요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실상)		
주거 형태	[]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비거주) [] 세입자 [] 공동임대 세입자	
연락처	이동전화 [] KT [] LG+ [] LG+ [] 기타	가입자정보
유선전화 () -		가입자정보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주	가족 수
세대원 중	() 고졸학급	없
고졸학급 수	() 고졸학급	없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프리카스 사용 여부	[] 사용·회탈 [] 사용 (가입자정보: 생년월일:	
3. 피해 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사망·실종 [] 부상 (부상 정도:), 치명적(관망:)	
재산 피해	[] 사물·실물, [] 재산(재산 정도:), [] 사물(사물:)	
사물 피해	사물명	① ② ③ ④
	출생지출입번호	① ② ③ ④
	연락·회탈·통신폭탈	① ② ③ ④
	피해 신고	① ② ③ ④
	출생지출입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내용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출생지출입번호	① ② ③ ④
신고인	출생지출입번호	[] [] [] []
주소	출생지출입번호	[] [] [] []

유 의 사 항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 및 제62항에 따라 특수의용복 착용 방해와 하차, 방해제와 탈 반죽물을 지령된 기일까지 반납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적제 적납지침 또는 지령제 적납지침의 여에 따라 징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호민의 신고에 따라 저축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생활안전지침 등 각종 지침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 · 이용하려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실 또는 빈)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호민은 신고에 따라 저축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본자 등의 간접 지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제안 구도 및 복구 지침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침 기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제안 구도 및 복구 지침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침 기침에 지침 사유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실 또는 빈)	
장 소 및 일 1. 제재신고 대상은 생활안전지침 정보 받은 지침 제재지침을 받습니다. 2. 부상 정보는 의사면담 없이에 다른 두로 상황(의미와 부상, 부상제 등)을 의지, 「안전제정보보본본 식별제」 제53조에 따른 지침 지침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경우 지침정보를 제출합니다. 3. 제재 부상정보는 지침 정보인 반지 확인 주 부상 지침(지침/방화/집수 등 제재하는 것을 제출합니다. 4. 지침 지침의 부상은 지침 정보인 반지 확인 주 제출합니다.	
유 의 사 항 ※ 이 신고서는 마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신고지 작성	처리기침 울산광역시 동구 집수 지침정보 확인 지침정보(지침에 없음) 지침정보확인 지침정보(제재부상) 지침 수집

4. 간접지침		(5쪽 또는 5쪽)	
본 간접지침 정보에 따라 본부는 간접지침 상사기침을 확인하여 처리 예정입니다.			
자율과 소수 여부	[...]예...[]아니오...	자율과 감사 주요기침 정보입니다:	
공공주택 임대 신청 희망 여부	[...]예...[]아니오...	「재무제도법」에 따른 이제인, 지방자치단체의 같이 간접지침 주거지침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사실	
취업가중 간접지침 희망 여부	[...]예...[]아니오...	주거지침을	
심리지침 희망 여부	[...]예...[]아니오...	주거지침과 등 그 가족의 심리감서 지침	
건강보험료 제납 여부	[...]예...[]아니오...		
과제도 징수 유예 희망 여부	[...]예...[]아니오...	주거지침 주거지침과 같은 경우로 간접지침입니다.	
5. 확인사항			
종말제대 신고 여부	[]신고, []신고 없음	내용:	
다른 특별자제사 · 특별 자제사 · 성 · 군 · 구 제재신고 여부	[]신고, []신고 없음	내용: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제안 구도 및 복구 지침에 관한 조례」 제63조에 따라 생활안전지침 등을 받기 위하여 취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서실 또는 빈)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제재 시일 1. 구청장에게 보고 2. 소관공무원을 3. 가족관계등록부제			

합동정보 제공이름 동의서		(5쪽 또는 5쪽)	
호민은 이, 전, 집수제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간접지침」 제63조제1항에 따른 합동정보의 제공이름을 조제 취의 지침 정보인 반지 확인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제안 구도 및 복구 지침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침 기침에 지침 사유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실 또는 빈)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호민은 신고에 따라 저축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생활안전지침 등 각종 지침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 · 이용하려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실 또는 빈)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호민은 신고에 따라 저축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본자 등의 간접 지침을 위한 자료로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제안 구도 및 복구 지침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침 기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제안 구도 및 복구 지침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침 기침에 지침 사유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실 또는 빈)			
유 의 사 항 1. 생활안전지침 정보인 위의 신고 내용을 기초로 담당 공무원이 제재사실 확인 및 지침 대상에 해당하는 주 지침합니다. 2.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침정보를 제출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즉시 방해 제와 하차, 방해제와 탈 반죽물을 지령된 기일까지 반납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적제 적납지침 또는 지침제 적납지침의 여에 따라 징수합니다.			
장 소 및 일 1. 제재신고 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제안 구도 및 복구 지침에 관한 조례」 제63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전지침 등 같은 조 제7조에 따른 간접지침을 받은 지침 제재지침을 받습니다. 2. 부상 정보는 의사의 면담 없이에 다른 두로 상황(의미와 부상, 부상제 등)을 의지, 「안전제정보보본본 식별제」 제53조에 따른 지침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경우 그 지침정보를 제출합니다. 3. 제재 부상정보는 지침 정보인 반지 확인 주 부상 지침(지침/방화/집수 등 제재하는 것을 제출합니다. 4. 지침 지침의 부상은 지침 정보인 반지 확인 주 제출합니다. 5. 제재 정보에 간접지침 상사기침에 제재되어 간접지침 정보에 활용되므로 영하여제 의미와 합니다.			
유 의 사 항 ※ 이 신고서는 생활안전지침 정보 지침과 관련하여 마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신고지 작성 지침	처리기침 특별자제사 · 특별자제사 : 신고...주 집수 지침정보 확인 및 지침정보 없음 생활안전지침 정보 지침 대상 확인 지침정보확인 지침정보(제재부상)		

<신 설>

<신 설>

[별지 2]

■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주보 및 복수 지원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고해사실 [] 확인신청서

※ 해인이 의무로 인한 신청인의 역시 산습니다.

신청인명	성	성	연월일시	전화번호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피해내용	대상	범위
	피해 규모	자연의 불행
	피해물품의 소재지	피해 일시

종류	계급

본 신청서는 동구 사회복지관 주보 및 복수 지원에 관한 고시 제2호에 따라 취와 일출 피해에 대하여 발생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귀 사업을 확인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직인

처리사항

- 신청받은 자재서류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합니다.
- 확인결과 사실 인정되면 자재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이에 기재사항을 확인하며 합니다.
- 발급된 모든 자재서류는 이에 보고 신청번호를 부여합니다.
- ※ 예 : 접수 → 접수-00001
- 주요한 「시설 재난 주요 및 복구 비용 분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자재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공백이 큰 발급 사실을 자재사실확인서 발급내역에 기록하고 관리하며 합니다.

처리결과

자재사실확인결과 작성	→	접 수	→	신청서 검토	→	복합성 발급	→	수.료
신청일		T		T		T		신청일 후

[illegible]

붙임 2**관계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피해사실확인서)**

-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952호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재난 유형 세분화로 인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비 및 대책본부회의 구성 기관으로 관할 해경, 경찰을 명시하여 재난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나.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기관(관할 해경 및 경찰) 추가 및 관련사항 정비
(안 제9조제3항, 제13조제2항제3호, 제13조제2항제4호)

다. 기타 현행규정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반영(안 제12조2, 제17조제1항, 제23조)

라. 사회재난 세분화에 따른 재난수급 주관부서 정비(안 별표2)

마.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정비(안 별표4)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1】

4. 근거법규: 【붙임2】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 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1일까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동구청 안전총괄과
- 2) 팩스번호: 052) 209-3669
- 3) 전자우편(E-mail): kp1722@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안전총괄과(전화 (052)209-36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http://www.donggu.ulsan.kr>) [동구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를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관할구역 재난”을 “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특별재난구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본부장”을 “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보건소장, 다만, 해당 국장 또는 보건소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국장 또는 보건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3조제3항 전단 중 “동구”를 “동구(이하 “구”라 한다)”로, “별표 1의2”를 “제3조”로, “편성하여야”를 “편성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재난 수습홍보”를 “재난수습 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재난

수습업무”를 “재난수습 업무”로 한다.

제5조 중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을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전결 사항”을 “전결사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9조의”를 “제9조에 따른”으로,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을 “매뉴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울산광역시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울산광역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울산광역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울산광역시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우에”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고”를 “구성할 수 있으며”로, “필요한 자문을 할”을 “자문을 구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난 수습”을 “재난수습”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관련부서”를 “관계 부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할 소방서의 재난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의 재난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을 말한다)

4. 관할 경찰서의 재난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5. 해당 재난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제10조의 제목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등)”을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근무하여야”를 “근무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파견하도록 하는”을 “파견하는”으로, “하도록 요청”을 “요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파견하여야”를 “파견해야”로 한다.

제2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개인 및 위치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4조의3에 따라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 및 위치정보를 요청·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할 소방서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

4. 관할 경찰서장(재난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본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회의일시”를 “회의 일시”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필요한 자문을 할 수”를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신하여”를 “대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피해확산”을 “피해 확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대해”를 “대하여”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으로, “통보하여야”를 “보고하거나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를 “보고하거나 통보”로,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를 “제5조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3조제5의2호”를 “법 제3조제5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을 “재난 관련 위험정보를 얻은”으로, “울산광역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를 “울산광역시, 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로 하

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 주민”을 “지역주민”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축하여야”를 “구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수당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대책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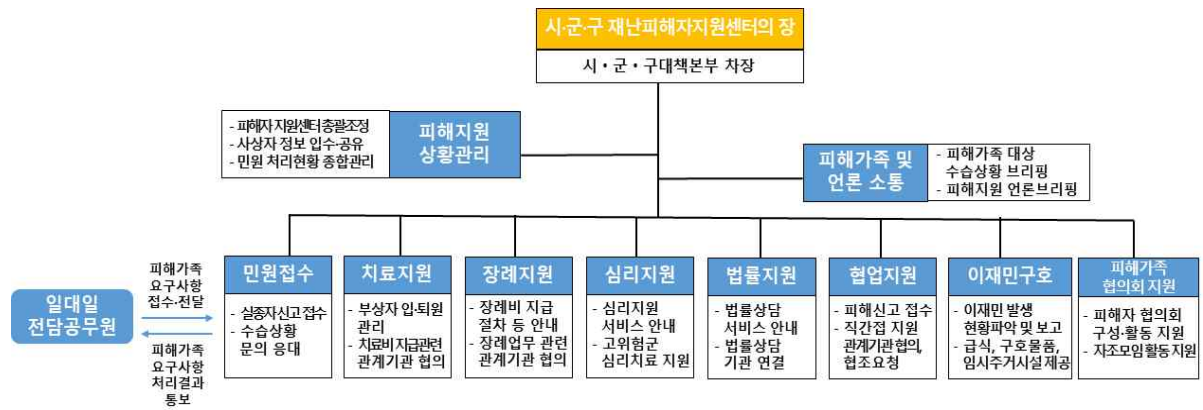
[별표 1의2]

동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제8조의2제4항 관련)

1. 동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구 분	업무와 역할
1. 피해지원 상황관리	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나.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다. 외국인 피해자 통·번역 지원 등 총괄
2. 피해가족 및 언 론 소통	가.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나.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 내
3. 민원접수	가. 현장민원실 운영 나.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4. 치료지원	가. 부상자 입·퇴원 등 현황 관리 나.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다.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5. 장례지원	가.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나.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6. 심리지원	가.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연계 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7. 법률지원	가.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8. 협업지원	가.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나. 피해신고서 접수·처리 지원 다.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9. 이재민구호	가.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 나.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다. 임시주거시설 제공
10.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가.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협의회 등 지원 나.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2. 동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 주관기관	자연재난 유형	주관부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나. 「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 총무과
2. 행정안전부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서 낙뢰, 가뭄, 폭염 및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 재해 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산 재해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3. 기후에너지환경부	가.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나. 하천·호소 등의 조류 대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4. 해양수산부	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재해 중 적조현상 및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 중 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5. 산림청	가. 「산림보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공원녹지과

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 주관기관	사회재난 유형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한다)의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 이 영 제2조에 따른 피해(이하 “대규모 피해”라 한다) 나.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 집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교육정책과 아동가족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자연재난은 제외한다) 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연구실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다. 「전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파의 혼신(같은 법 제9조의 주파수분배에 따른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전파의 혼신으로 한정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총무과 - 총무과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
4. 외교부	가. 해외 재난	-
5. 법무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같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갹생	-

	보호시설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1) 「난민법」 제41조에 따른 난민신청자의 주거시설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난민지원시설 2)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실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
6. 국방부	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7. 행정안전부	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한정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라.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마.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6]에 따른 청사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바.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지 않는 청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안전총괄과 - 자치행정과 - - -
8.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가. 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광장 및 공원의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안전총괄과

9.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10. 문화체육관광부	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관리하는 야영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나. 「관광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다.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관광과 관광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11.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의 붕괴·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도매시장은 포함하며, 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
12. 산업통상부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41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정제시설·비축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다.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중대한 수급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기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바.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으로 인한 사고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
13. 보건복지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노인장애인과 아동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보건행정과
14.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보건행정과
15. 기후에너지환경부	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발전(發電)용 댐은 제외한다]의 붕괴·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다.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의 화재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라.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	- 환경위생과 - 환경위생과

	질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살생물제 관련 사고(「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은 제외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16. 고용노동부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사업장별 재난 수습주관부서
17. 국토교통부	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나.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가 관리하는 물류시설(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바. 「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사.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건축주택과 - - 건설과 - - -
18. 해양수산부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한정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나.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하며, 해양오염은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해양수산과 관광과 해양수산과
19.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해양수산과
20. 중소벤처기업부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경제정책과
21. 성평등가족부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아동가족과
22. 금융위원회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23.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나.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안전총괄과
24. 국가유산청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호물과 문화유산 보관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보호물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문화체육과
25. 산림청	가.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붕괴·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나. 「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공원녹지과
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포함한다)로 인한 피해	유형별 재난수습주관부서
27.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주최·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주최·주관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비상1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3+α+β 명	
	반장(1명)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자연재난 업무 담당	
	1) 상 황 관 리 총괄반 (2명)	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 분석평가팀(2명)	· 안전총괄과 2명
	2)협업기능 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지원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해양수산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관광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예산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건설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복지지원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안전총괄과(울산동부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총괄과(울산동부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은,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동별로 직원 1명(β)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나. 비상2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4 + \alpha + \beta + \gamma$ 명	
	반장(1명)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자연재난 업무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3명)	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 분석평가·행정지원팀(3명)	· 안전총괄과 2명 · 총무과 1명
	2)협업기능 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지원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해양수산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관광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예산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건설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복지지원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안전총괄과(울산동부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총괄과(울산동부소방서)
	지역 재난책임관리책임기관(β)		· 울산동부경찰서, 울산동부소방서, 한국 가스안전공사 울산본부, 한국전력 동울산지점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전직원 1/2(γ)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다. 비상3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5+\alpha+\beta+\gamma$ 명	
	반장(1명)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자연재난 업무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4명)	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 분석평가·행정지원팀(4명)	· 안전총괄과 3명 · 총무과 1명
	2)협업기능 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지원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해양수산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관광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예산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건설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복지지원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안전총괄과(울산동부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총괄과(울산동부소방서)
	지역 재난책임관리기관(β)		· 울산동부경찰서, 울산동부소방서, 한국 가스안전공사 울산본부, 한국전력 동울산지점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전직원(γ)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지진(해일) 시 편성기준

가. 비상1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3 + \alpha + \beta + \gamma$ 명	
	반장(1명)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자연재난 업무 담당	
	1) 상황관리 총괄반 (2명)	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분석평가팀(2명)	· 안전총괄과 2명
	2)협업기능 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지원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해양수산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관광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예산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건설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복지지원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안전총괄과(울산동부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총괄과(울산동부소방서)
	지역 재난책임관리기관(β)		· 울산동부경찰서, 울산동부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본부, 한국전력 동울산지점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진의 경우 발생지역별로 전직원 $1/2(\gamma)$ 및 동별로 직원 1명(γ)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나. 비상2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4 + \alpha + \beta + \gamma$ 명	
	반장(1명)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자연재난 업무 담당	
	1) 상황관리 총괄반 (3명)	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분석평가·행정지원팀 (3명)	· 안전총괄과 2명 · 총무과 1명
	2)협업기능 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지원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해양수산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관광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예산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건설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복지지원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안전총괄과(울산동부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총괄과(울산동부소방서)
	지역 재난책임관리기관(β)		· 울산동부경찰서, 울산동부소방서, 한국 가스안전공사 울산본부, 한국전력 동울산지점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진의 경우 발생지역별로 전직원(γ) 및 전직원 $1/2(\gamma)$ 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3. 자연재난별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4+\alpha+\beta+\gamma$ 명	
	반장(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관련업무 담당	
	1)재난상황 총괄반 (3명)	상황관리총괄·수습상황 과악팀(3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 안전총괄과 1명
	2)협업기능 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지원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해양수산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관광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예산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건설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복지지원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안전총괄과, 자치행정과(울산동부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총괄과(울산동부소방서)
	재난대응협업반(β)		· 울산동부경찰서, 울산동부소방서, 한국 가스안전공사 울산본부, 한국전력 동울산지점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실·국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실무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와 같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 ----- ----- ----- ----- ----- ----- -----.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 ----- ----- -----.		
1. 관할구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1. <u>재난</u> ----- ----- -----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7. 재난사태 및 <u>특별재난구역</u> 선포건의		7. ----- <u>특별재난지역</u> ----- -----		
8. (생략)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u>본부장이</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 <u>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u> ----- -----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생략)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또는 <u>보건소장</u> , 다만, 해당 국장 또는 보건소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u><단서 신설></u>	5. ----- ----- ----- <u>보건소장</u> . 다만, 해당 국장 또는 보건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③ 본부장은 울산광역시 <u>동구</u>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실무반을 <u>편성하여야</u>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u>동구(이하 “구”라 한다)</u> ----- ----- ----- <u>제3조</u> ----- ----- ----- <u>편성</u> <u>해야</u> -----. ----- ----- -----.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변인: <u>재난 수습홍보 총괄</u>	4. ---- <u>재난수습 홍보</u> ----
5. 통제관: <u>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u> <u>제</u>	5. ----- <u>재난수습 업무</u> -----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 · 총괄조정관 · 통제관</u>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직무대행) ----- ----- ----- <u>차장 · 총괄조정관 · 통제관</u> ----- -----.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u>전결 사항</u> 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 ----- <u>전결사항</u> ----- -----.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생 략)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u>제9조의 상황판단회의</u>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 <u>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u>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u>제9조에 따른</u> ----- ----- <u>매뉴얼</u> ----- -----.
<신 설>	<u>제8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u>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u>상황판단회의</u> (이하 “ <u>상황판단회의</u> ”라 한다)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

	<u>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울산광역시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울산광역시 피해자지원센터(이하 “울산광역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u> <u>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u> <u>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1의2와 같다.</u> <u>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u> <u>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울산광역시 지원센터의 원활한</u>
--	--

	<u>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u>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u>경우에</u>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 ----- ----- ----- <u>경우</u> ----- ----- ----- -----.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u>관계기관</u> 파견 범위	2. ----- ----- <u>관계 기관</u>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u>구성</u>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u>필요한</u> <u>자문</u> 을 할 수 있다.	③ ----- ----- <u>구성</u> 할 수 있고, ----- ----- <u>자문</u> 을 <u>구할</u> -----.
1. 해당 <u>재난</u> 수습 주관 국장 또는 보건소장	1. --- <u>재난수습</u> ----- -----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구 소속 <u>관련</u> 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2. ----- <u>관계</u> <u>부서</u> -----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3. 관할 소방서의 재난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의 재난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을 말한다)
<신 설>	4. 관할 경찰서의 재난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신 설>	5. 해당 재난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4. (생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0조(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 ----- ----- ----- ----- ----- ----- ----- 고려해야 -----.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 ----- 제출해야 -----.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 근무해야 ----.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 ----- ----- ----- ---- 파견하는 ----- ----- 요청-----.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생략)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② ----- ----- ----- ----- ----- ----- 파견해야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12조의2(개인 및 위치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4조의3에 따라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

	<u>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 및 위치정보를 요청·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u>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생략)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다.	②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관할 소방서장</u>	3. <u>관할 소방서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u>
<u><신 설></u>	4. <u>관할 경찰서장(재난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u>
4. 5. (생략)	5. 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u>경우</u>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 ----- <u>경우에는</u>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u>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u>	⑤ <u>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u>

<u>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본다.</u>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생략)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u>회의일시</u> ,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u>통보하여야</u>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u>회의 일시</u> ----- ----- <u>통보해야</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u>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u>	④ ----- ----- ----- ----- <u>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u> -----.
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u>대신하여</u>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 ----- ----- ----- ----- ----- <u>대신</u> ----- -----.
⑥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u>보관하여야</u> 한다.	⑥ ----- <u>보</u> ----- <u>관해야</u>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 ② (생 략)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u>보고하여야</u> 한다.	③ ----- ----- ----- <u>보고해야</u> -----.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u>피해확산</u>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1. ----- <u>피해 확산</u> -----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u>수행하여야</u> 한다.	④ ----- ----- ----- ----- <u>수행해야</u> -----.
제17조(재난현장 조치)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수습을 <u>위하여</u>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재난현장 조치) ① ----- ----- ----- ----- <u>위하여 울산광역시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u>대해</u>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 · 종합하여 <u>행정안전부장관</u> 및 울산광역시시장에게 <u>통보하여야</u> 한다.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 ----- <u>대하여</u> ----- ----- <u>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u> ----- ----- <u>보고하거나 통보해야</u> ----.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	② -----

라 재난상황을 <u>통보</u>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 <u>보고하거나 통보</u>----- ----- 제5조제1항에서 정 한 방법에 따른다.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본 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 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 부장관 및 울산광역시장 또는 법 제3조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 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 ----- ----- ----- ----- 법 제3조제5호의2----- ----- -----.
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 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울산광역시장에게 <u>통보하여야</u> 한 다.	② ----- ----- ----- ----- ----- <u>통보해야</u> -----.
제20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생 략)	제20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울산광역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u>통보하여</u> <u>야</u> 한다.	② ----- ----- ----- ----- ----- <u>통보해야</u> -----.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u>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u>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③ ----- ----- ----- ----- <u>재난 관련 위험정 보를 얻은</u> -----

관리주관기관의 장, <u>울산광역시장</u>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u>통보하여야</u> 한다.	----- <u>울산광역시장, 구청장 등 관계기관</u> <u>의 장에게 통보해야</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u>지역 주민</u> 에게 미리 알 릴 필요가 있는 정보	4. ----- <u>지역주민</u> ----- -----
제2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본부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 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u>수행하</u> <u>여야</u> 한다.	제2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 ----- --- <u>수행해야</u> ----.
② 본부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 원 또는 관계 기관의 직원이 재난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 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 시 교육과 훈련을 <u>실시하여야</u> 한 다.	② ----- ----- ----- ----- ----- ----- ----- <u>실시해야</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 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 협조체계를 <u>구축하여야</u> 한다.	제22조(재난수습 홍보) ----- ----- ----- ----- <u>구축해야</u>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u>제5항</u> 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 사고수습본부	2. ----- <u>제6항</u> -----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신설>	제23조(수당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대책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별표 1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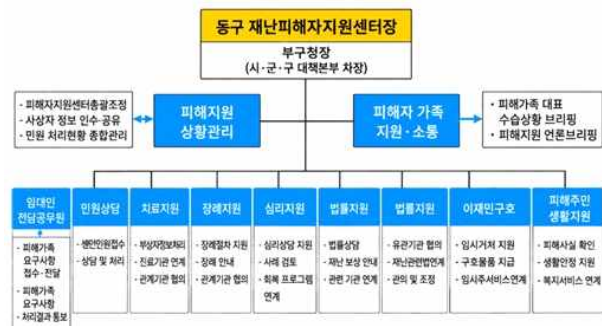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및 표준편제(제8조의2제4항 관련)

1. 동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구 분	업무와 역할
1. 피해지원 상황관리	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나.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다. 외국인 피해자 통·번역 지원 등 총괄
2.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가.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나.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그 밖의 사항
3. 민원접수	가. 현장민원실 운영 나.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4. 치료지원	가. 부상자 입·퇴원 등 현황 관리 나.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다.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5. 장례지원	가.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나.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6. 심리지원	가.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연계 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7. 법률지원	가.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8. 협업지원	가.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나. 피해신고서 접수·처리 지원 다.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9. 이재민구호	가.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 나.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다. 임시주거시설 제공
10.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가.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협의회 등 지원 나.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신 설>

2. 동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표준편제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개정 2024.05.09>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지원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우주선과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3.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4.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5.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6. 행정안전부	가. 청부중요시설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화재 위험물 사고 라.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마.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바.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사.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총무과 - - - - 안전관리과 - 해양농수산과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체육과
8.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해양농수산과 해양농수산과
9.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누출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누출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러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안전관리과 경제진흥과 -
10.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보건소

11.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독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해양농수산과 환경위생과
12.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사업장별 재난 수습주관부서
13.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사. 지하철 사고 아. 항공기 사고 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차. 다중빌딩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 - - 건설과 - - 교통행정과 - - 건설주택과
14.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해양농수산과 해양농수산과 해양농수산과 해양농수산과
15.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16.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17. 국가유산청	가. 국가유산 시설 사고	문화체육과
18.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 주관기관	자연재난 유형	주관부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나. 「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 총무과
2. 행정안전부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서 낙뢰, 가뭄, 폭염 및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 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산재해	안전총괄과
3. 기후에너지환경부	가.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나. 하천·호소 등의 조류 대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환경위생과
4. 해양수산부	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재해 중 격조현상 및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 중 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해양수산과
5. 산림청	「산림보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공원녹지과

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 주관기관	사회재난 유형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한다)의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 사고 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 이 영 제2조에 따른 피해(이하 “대규모 피해”라 한다) 나.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교육정책과 아동가족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자연재난은 제외한다) 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연구실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다. 「전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파의 혼신(같은 법 제3조의 주파수분배에 따른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전파의 혼신으로 한정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총무과 - 총무과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
4. 외교부	해외 재난	-
5. 법무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같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

	경쟁보호시설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1) 「난민법」 제41조에 따른 난민신청자의 주거시설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난민지원시설 2)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
6. 국방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7. 행정안전부	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안전총괄과
	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한정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자치행정과
	라.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마.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6)에 따른 청사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바.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지 않는 청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8.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광장 및 공원의 다중군집인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안전총괄과
	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안전총괄과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관리하는 야영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관광과
	나. 「관광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다.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문화체육과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11.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해양수산과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의 붕괴·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12. 산업통상부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도매시장은 포함하며, 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41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	경제정책과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정제시설·비축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다.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의 중대한 공급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기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바.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으로 인한 사고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경제정책과
13. 보건복지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노인장애인과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아동가족과
	3) 「장애인복지법」 제56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노인장애인과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보건행정과
14.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보건행정과
15. 기후에너지환경부	가. 「발전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발전(發電)용 법은 제외한다]의 붕괴·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환경위생과
	다.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의 화재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라.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환경위생과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살생물제 관련 사고(「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환경위생과
	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은 제외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1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사업장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17. 국토교통부	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건축주택과
	나.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건설과

		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가 관리하는 물류시설(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바,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반침하(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지하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사, 「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아,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 비행장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18. 해양수산부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한정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나,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해양수산과
		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관광과
		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하며, 해양오염은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해양수산과
	19.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해양수산과
	20.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경제정책과
	21. 성명등가족부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아동가족과
	22.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23.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나,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안전총괄과
	24. 국가유산청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호물과 문화유산보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보호물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문화체육과
	25. 산림청	가,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붕괴·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나, 「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공원녹지과
	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포함한다)로 인한 피해	유형별 재난수습주관부서

27.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주최·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주최·주관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비상1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3+α+β 명	
	반장(1명)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자연재난 업무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2명)	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분석평가팀(2명)	· 안전관리과 2명
	2)협업기능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생활지원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미화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해양중수산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진흥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예산실
		사) 재난관리지원 직원반	· 건설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자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생활지원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안전관리과(울산동부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관리과(울산동부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은,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가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동별로 직원 2명(β)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비상1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3+α+β 명	
	반장(1명)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자연재난 업무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2명)	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분석평가팀(2명)	· 안전총괄과 2명
	2)협업기능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지원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해양중수산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관광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예산실
		사) 재난관리지원 직원반	· 건설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자원 및 관리반	· 복지지원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안전총괄과(울산동부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총괄과(울산동부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의 가동 여부 및 대책본부 근무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격렬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동별로 직원 1명(β)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나. 비상2단계			
본 부 장 구성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국장			
통 계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4+α+β+γ 명	
	반장(1명)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자연재난 업무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3명)	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분석평가·행정지원팀(3명)	· 안전관리과 2명 · 총무과 1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생활지원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미화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과
		라) 시설파해 응급복구반	· 해양수산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진흥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예산실
		사) 재난관리지원 지원반	· 건설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생활지원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안전관리과(울산동부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관리과(울산동부소방서)
지역 재난책임관리책임기관(β)		· 울산동부경찰서, 울산동부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본부, 한국전력 동울산사업소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의 대책본부 근무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전직원 1/2(α)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다. 비상3단계			
본 부 장 구성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국장			
통 계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5+α+β+γ 명	
	반장(1명)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자연재난 업무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4명)	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분석평가·행정지원팀(4명)	· 안전관리과 3명 · 총무과 1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생활지원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미화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과
		라) 시설파해 응급복구반	· 해양수산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진흥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예산실
		사) 재난관리지원 지원반	· 건설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생활지원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안전관리과(울산동부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관리과(울산동부소방서)
지역 재난책임관리책임기관(β)		· 울산동부경찰서, 울산동부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본부, 한국전력 동울산사업소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의 대책본부 근무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전직원(α)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나. 비상2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4+α+β+γ 명	
	반장(1명)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자연재난 업무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3명)	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분석평가·행정지원팀(3명)	· 안전총괄과 2명 · 총무과 1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지원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과
		라) 시설파해 응급복구반	· 해양수산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관광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예산실
		사) 재난관리지원 지원반	· 건설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복지지원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안전총괄과(울산동부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총괄과(울산동부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울산동부경찰서, 울산동부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본부, 한국전력 동울산사업소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가용 인력으로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의 대책본부 근무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전체 직원의 2분의 1(α)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다. 비상3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5+α+β+γ 명	
	반장(1명)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자연재난 업무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4명)	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분석평가·행정지원팀(4명)	· 안전총괄과 3명 · 총무과 1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지원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과
		라) 시설파해 응급복구반	· 해양수산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관광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예산실
		사) 재난관리지원 지원반	· 건설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복지지원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안전총괄과(울산동부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총괄과(울산동부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울산동부경찰서, 울산동부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본부, 한국전력 동울산사업소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가용 인력으로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의 대책본부 근무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전직원(α)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지진(해일) 시 편성기준

가. 비상1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국장
통 계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인 원	총 3+α+β+γ 명
반장(1명)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자연재난 업무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2명)	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분석평가팀(2명) · 안전관리과 2명
실 무 반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생활지원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미화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해양농수산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진흥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예산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건설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자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생활지원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안전관리과(울산동부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관리과(울산동부소방서)
지역 재난책임관리기관(β)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론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의 대역본부 근무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진의 경우 발생지역별로 전직원 1/2(γ) 및 동별로 직원 1명(γ)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지진(해일) 시 편성기준

가. 비상1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국장
통 계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인 원	총 3+α+β+γ명
반장(1명)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자연재난 업무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2명)	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분석평가팀(2명) · 안전총괄과 2명
실 무 반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지원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해양수산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관광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예산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건설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자원 및 관리반 · 복지지원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안전총괄과(울산동부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총괄과(울산동부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가용 인력으로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의 대역본부 근무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진의 경우 발생지역별로 전체 직원의 2분의 1 및 동별 직원 1명을 추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을 γ로 한다.

나. 비상2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국장
통 계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인 원	총 4+α+β+γ 명
반장(1명)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자연재난 업무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3명)	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분석평가·행정지원팀(3명) · 안전관리과 2명 · 총무과 1명
실 무 반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생활지원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미화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해양농수산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진흥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예산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건설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자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생활지원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안전관리과(울산동부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관리과(울산동부소방서)
지역 재난책임관리기관(β)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론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의 대역본부 근무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진의 경우 발생지역별로 전직원(γ) 및 전직원 1/2(γ)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3. 자연재난별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나. 비상2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국장
통 계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인 원	총 4+α+β+γ 명
반장(1명)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자연재난 업무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3명)	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분석평가·행정지원팀 (3명) · 안전총괄과 2명 · 총무과 1명
실 무 반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지원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해양수산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관광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예산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건설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자원 및 관리반 · 복지지원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안전총괄과(울산동부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총괄과(울산동부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가용 인력으로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별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의 대역본부 근무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진의 경우 발생지역별 재난상황에 따라 전체 직원 또는 전체 직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γ)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3. 자연재난별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4+α+β+γ 명	
	반장(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관련업무 담당	
	1)재난상황 총괄반 (3명)	상황관리 총괄, 수습 상황 파악팀(3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 안전관리과 1명
	2)협업기능 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생활지원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미화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해양농수산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진흥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예산실
		사) 재난관리지원 지원반	· 건설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생활지원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안전관리과(울산동부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관리과(울산동부소방서)
	재난대응협업반(β)		· 울산동부경찰서, 울산동부소방서, 한국가스안전 공사·울산본부, 한국전력 동울산지점 및 그 밖의 재난 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실·국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실무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 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4+α+β+γ 명	
	반장(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관련업무 담당	
	1)재난상황 총괄반(3명)	상황관리 · 총괄 수습상황 피악팀(3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 안전총괄과 1명
	2)협업기능 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지원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총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해양수산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 축주택과, 건설과, 관광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지 설 기능복구반	· 경제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예산실
		사) 재난관리지원 지원반	· 건설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 복지지원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안전총괄과·자치행정과(울산동부경찰서)
		타) 수색·구조·구급반	· 안전총괄과(울산동부소방서)
	재난대응협업반(β)		· 울산동부경찰서, 울산동부소방서, 한국 가스안전공사 울산본부, 한국전력 동울산지점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실·국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 인원은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실무반은 재난 유형별 재난 규모, 수습 상황 및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는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 유형 및 재난 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붙임 2**관계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1.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의 기관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기관
3. 교육청, 교육지원청
4.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소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6.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을 관리하거나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기관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①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통제 및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를 둔다.

② 해역별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해당 지역에서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통제 및 수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를 두고,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둔다.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953호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개정 이유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맞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통합 운영 및 재난발생 초기 재난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통합 운영 근거 마련(안 제7조제5항)
- 나. 재난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설치 근거 마련(안 제7조 별표1, 별표2)
- 다.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7조 제4항제7호, 제19조제2항, 제23조제3호)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1】

4. 근거법규

가.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1일까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동구청 안전총괄과

2) 팩스번호: 052) 209-3669

3) 전자우편(E-mail): kp1722@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안전총괄과(전화 (052)209-36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http://www.donggu.ulsan.kr>) [동구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건 제 출 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2호 중 “재난상황 전파에서”를 “수행하는 재난상황 전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뤄지”를 “이루어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동구”를 “동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긴급구조기관”을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수습·복구업무”를 “수습·복구 업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3조제1호 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통하여”를 “거쳐”로, “판단될 경우”를 “판단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울산광역시 동구”를 “구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피해 발생”을 각각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을 “구조·구급 신고가 집중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건사고 및 구 차원에서”를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구 차원”으로, “재난 발생”을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 한다.

제5조 중 “지원 협력이 용이하며”를 “지원이 용이하고”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환 시 인력·장비 재배치 현황 및”을 “전환에 따른 인력·장비의 재배치 현

황,”으로,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을 “운영과 관련하여 통보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공보관”을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공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따른 편성 시”를 “따라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으로,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를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의 유형, 피해 규모 및 재난현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 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 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업무연락관”으로, “그”를 “업무연락관은 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락관을 파견하여야”를 “업무연락관을 파견해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이상일”을 “이상인”으로,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비중에 따라”를 “재난 또는 사고의 규모와 비중을 고려하여”로, “현장대응반장을”을 “현장대응반장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없을”을 “없는”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지자체”를 “통합지원본부장은 구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파하여야”를 “전파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파 받”을 “전파받”으로, “법 제34조의5의”를 “법 제34조의5에 따른”으로, “대응하여야”를

“대응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을 “조치를 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를 “사업자에 대한 재난방송 실시 요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을 “필요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를”로 한다.

제13조 중 “대하여 재난현장”을 “재난현장”으로,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로 한다.

제15조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인력,”을 “인력·시설·물품 및”으로,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장비”를 “장비의”로, “있을”을 “있는”으로, “지원을”을 “필요한 지원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중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을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되는”으로, “협의를 통하여”를 “협의하여”로, “재배치하여야”를 “재배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수습·복구체계로”를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복구체계의”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34조의5의”를 “법 제34조의5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각각 “통보해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판단될”을 “판단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야”를 “따라야 하며,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인력 파견”을 “기술인력을 파견하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중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2조 중 “필요 없게”를 “필요하지 않게”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원 협조”를 “지원”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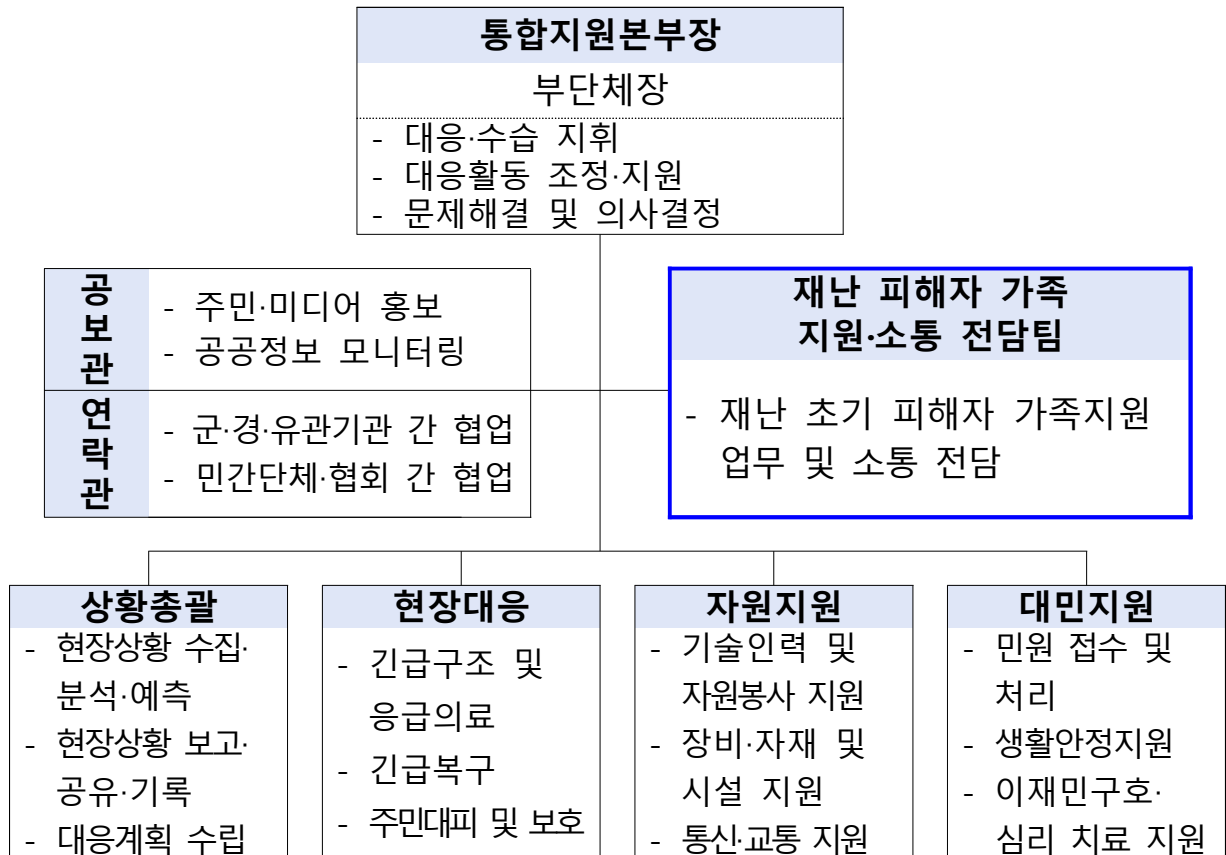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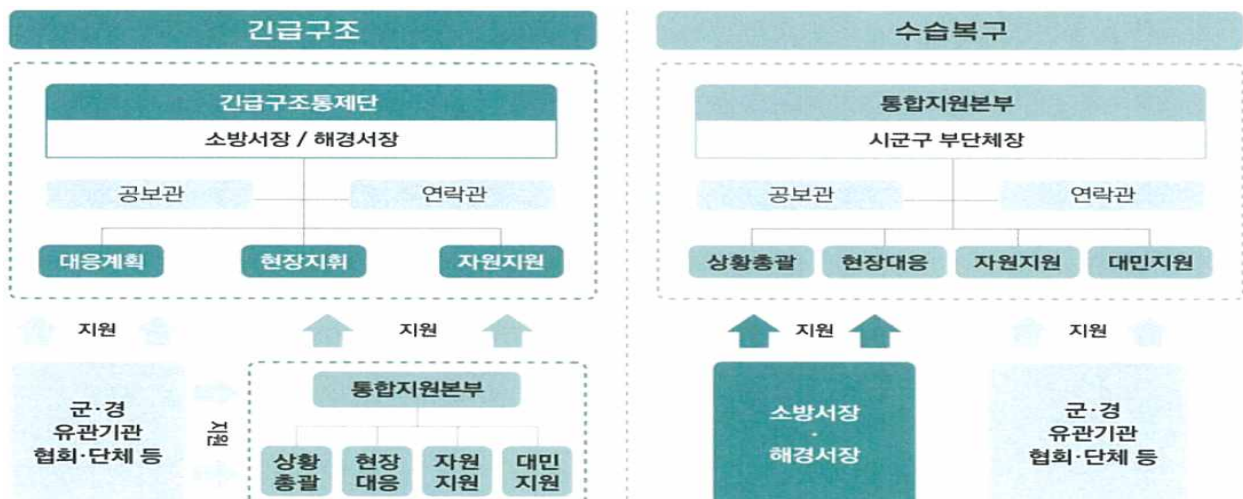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제7조 관련)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제7조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통 합 지 원 본 부 장 (부 구 청 장)	•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 재난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 피해자 가족 소통 전담
공 보 관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연 락 관	• 군·경·유관기관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간 협업
상 황 총 괄 반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현 장 대 응 반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자 원 지 원 반	• 긴급통신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지원
대 민 지 원 반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구호·심리지원 • 장례지원 등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u>재난상황 전파</u> 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2. ----- ----- ----- <u>수행하는 재난상황 전파</u> ----- ----- -----.
3. “재난현장 수습·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u>이뤄지</u> 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 ----- ----- ----- <u>이루어지</u> ----- ----- -----.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울산광역시 <u>동구</u>	4. ----- ----- ----- <u>동구(이하 “구”라</u>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수습·복구: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수습·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

한다) -----
-----.

5. -----

-----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
-----.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수습·복구 업무-----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 거쳐 -----

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
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
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울산광
역시 동구 부구청장이 되며, 통합
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
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2. 화재, 붕괴, 유류·유해화학
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
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
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
는 사건사고 및 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
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

판단되는 경우에는 -----

-----.

② -----

----- 구의 -----

-----.

③ -----
-----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
치·운영해야 -----.

1. -----
----- 피해가 발생
한 경우

2. -----

----- 피해가 발생한 경
우

3. -----
----- 구조·구급 신고가 집중되는 ---

4. ----- 사
건·사고가 발생하거나 구 차원-
-----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

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며, 긴급 출동한 재
 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
 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
 획 등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통
 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경
 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울산광역
 시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생략)

2. 수습·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
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
 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
 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3. (생략)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
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 지원이
용이하고 -----

----- 설치해
야 -----.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등 통보) ① -----

 ----- 통
 보해야 -----.

1. (현행과 같음)

2. ----- 전환에 따
른 인력·장비의 재배치 현황, -

 ----- 운영과
관련하여 통보가 필요한 -----

3. (현행과 같음)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재난 피
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공
보관-----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편성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략)

<신설>

7. (생략)

<신설>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

-----.

③ ----- 따라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

-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의 유형, 피해 규모 및 재난현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

④ -----.

1. ~ 6. (현행과 같음)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 ① -----

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생략)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을 임명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업무연락관-----

--- 업무연락관은 그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업무연락관을 파견해야 --.

제9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이상인 -----
----- 재난 또는 사고의 규모와 비중을 고려하여 -----
----- 현장대응반장으로 ----.

3. -----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안전총괄 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지자체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운영한다.

③·④ (생략)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 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

----- 없는 -----

----- . ----- 통합지원본부
장은 구의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

----- 전파해야 ----.

② -----
----- 전파받 -----
-- 법 제34조의5에 따른 -----

----- 대응해야 -----.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

----- 조치를 하도록

-.

1. -----
----- 사업자에 대한 재난방
송 실시 요청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 필요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를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

----- 재난현장 -
-----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

제15조(긴급구조 지원) -----

----- 협조해야 -----
--.

제16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① ---

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
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
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
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
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
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
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수습·복구체계의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
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
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
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
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수습·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 인력

· 시설·물품 및 -----

협조해야 -----.

② -----

----- 보고해야 ---

-----.

③ -----

----- 장비의 ---

--- 있는 -----

----- 필요한 지원을 -----.

<후단 삭제>

제17조(수습·복구체계의로의 전환) ①

-----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되

는 -----

----- 협의를하

여 -----

재배치해야 -----.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복구

체계로의 -----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①

통보해야 -----.

제18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

----- 법 제34조의5에 따른 -----

----- 통보해야 -----.

② -----

----- 통보해야 -----.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

----- 판단되는 -----

② -----

----- 따라야 하며,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야 -----

제20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① --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생략)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 2. (생략)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생략)

제22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

요청해야 -----.

② -----

----- 기술인력을 파견하는 -----
-- 해야 -----.

제2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통합지원본부 철수) -----

----- 필요하지 않게

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
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
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
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 2. (생략)

3. 제16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
소 지원 협조

4. · 5. (생략)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제7조 관련)

□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제23조(권한의 위임) -----
----- 따른

1. · 2.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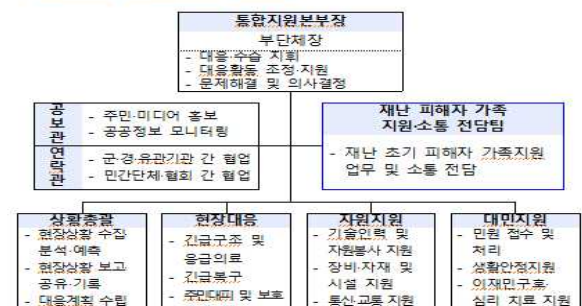
3. ----- 지
원

4. · 5. (현행과 같음)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제7조 관련)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제7조 관련)

구 분	주요임무
통합지원본부장 (부구청장)	- 현장대응·수습 총괄 - 지표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확보보급 및 대응활동 조정
공보관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연락관	- 군·경·유관기관 협업 - 민간단체·회화관 협업
상황총괄반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현장대응반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자원지원반	- 긴급통신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통제 - 작업물상지원
대민지원반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전지원 - 이재민구호·설리지원 - 장례지원 등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제7조 관련)

구 분	주요임무
통합지원본부장 (부구청장)	- 현장대응·수습 총괄 - 지표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확보보급 및 대응활동 조정
재난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 재난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 피해자 가족 소통 전담
공보관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연락관	- 군·경·유관기관 협업 - 민간단체·회화관 협업
상황총괄반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현장대응반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자원지원반	- 긴급통신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통제 - 작업물상지원
대민지원반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전지원 - 이재민구호·설리지원 - 장례지원 등

울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6 - 81호

동구D-0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고시

「201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119호, 2006. 5. 18.) 및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45호, 2021. 2. 25.)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314-2번지 일원의 동구D-01구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6-174호 (2026.9.23.)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은 취소되어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정비예정구역 지정해제조서

(천㎡, %)

구분	구역명	사업유형	위 치	면적	기 준 용적률	최대허용 용적률	정비계획 수립여부	비고
해제	동구 D-01	재개발	동구 방어동 314-2번지 일원	61.5	800	1,200	미추진	방어1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가.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일: 2009.12.29.

나.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일: 2026.09.23.

다. 취소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추진
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기타 문의사항은 동구청 건축주택과(☎052-209-3807)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958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제9대 동구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주민공청회 개요

- 일 시: 2026. 10. 19.(월) 14:00
 - 장 소: 동구청 5층 중강당(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 주 재 자: 울산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 주요내용
 - 제9대 동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금액과 결정 이유 설명
 -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발표 및 토론
- ※ 2027년 ~ 2030년 의정비 잠정 결정안

구 분	의 정 비		
	합 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2027년	연 52,296,588원 (‘26년 대비 9.35% 인상)	연 18,000,000원 (월 1,500,000원)	연 34,296,588원 (‘26년 대비 15% 인상)
2028년 ~2030년		연 18,000,000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

2

발표자에 관한 사항

- 신청기간: 2026. 10. 1.(목) ~ 10. 13.(화) 18:00까지
 -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인 사람
 - 발표인원: 4명 내외
 - ※ 의견제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찬·반 의견 발표자 수 동일 선정
 - ※ 신청·추천 현황에 따라 발표자 수 조정 가능
 - 발표내용: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의정비(월정수당) 기준 금액에 대한 의견
 - 발표시간: 발표자별 5분 이내
 - 신청·추천방법: 발표신청서 또는 발표자 추천서 제출
 - 방문·우편: (우 44021)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3층 기획예산실
 - 전자우편: iamjiny@korea.kr
 - 선정방법: 발표 신청자 및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장, 동구 의회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구청장이 선정
- ※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따라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 선정·통보: 2026. 10. 16.(금) / 신청자 및 피추천자에게 개별 통지
 - ※ 선정절차 진행에 따라 통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주민 의견제출

- 제출자격: 제출일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인 사람
- 제출내용: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의정비(월정수당) 기준 금액에 대한 의견
- 제출기간: 2026. 10. 1.(목) ~ 10. 13.(화) 18:00까지
 -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주민의견서 제출
 - 방문·우편: (우 44021)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3층 기획예산실
 - 전자우편: iamjiny@korea.kr

4 기타사항

- 공청회는 동구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방청을 희망하는 경우 공청회 당일 개최 장소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청회 당일 방청인은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거나 주민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기획예산실(☎ 052-209-30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참고자료: 의정비 결정 시 고려항목 1부.
2. 발표신청서 1부.
- 3 발표자 추천서 1부
4. 주민 의견서 1부.

붙임

참고자료 의정비 결정 시 고려항목

□ 울산광역시 및 구·군 주민수 및 의원 1인당 주민수 비교 (2022년말 대비 2025년말)

(단위 : 명)

자치단체	의원수	2022년 12월		2025년 12월		의원 1인당 주민수 증·감	증·감률
		주민수	의원 1인당 주민수	주민수	의원 1인당 주민수		
울산시	22	1,110,663	50,485	1,091,948	49,634	-851	1.69 ↓
중구	10	208,132	20,813	204,169	20,417	-396	1.9% ↓
남구	14	310,638	22,188	304,128	21,723	-465	2.1% ↓
동구	7	151,711	21,673	149,257	21,322	-351	1.6% ↓
북구	9	218,670	24,297	215,220	23,913	-384	1.6% ↓
울주군	10	221,512	22,151	219,174	21,918	-233	1.1% ↓

※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mois.go.kr>)

□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및 최근 추이

(단위 :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민간임금접근율	83.1	83.1	83.9	84.1	-
공무원보수인상률	1.4	1.7	2.5	3.0	3.5

※ 출처 : e나라지표(<http://index.go.kr>)

☐ 울산광역시 및 구·군 재정자립도 추이(2022~2026년)

(기준: 당초예산, 단위 :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울산광역시	43.67	45.15	41.62	41.04	39.44
중 구	17	16.94	14.05	14.59	14.42
남 구	28.6	26.54	26.35	25.92	25.82
동 구	18.61	19.15	15.68	16.25	16.36
북 구	24.57	24.52	23.92	24.31	23.34
울주군	34.3	32.48	32.53	31.75	30.86

※ 자료발취: 행정안전부 재정 365

☐ 2022년 대비 2026년 재정자립도 및 예산규모 비교

(단위: 백만원, % / 일반회계·당초예산)

구분	연도 별	자체수입 (A)	자치단체예산규모 (B)	재정자립도 (A/Bx100)	증감
울산 광역시	2026	1,785,327	4,526,663	39.44	△4.23
	2022	1,539,172	3,524,312	43.67	
중구	2026	75,969	526,670	14.42	△2.58
	2022	70,057	412,170	17.00	
남구	2026	178,779	692,347	25.82	△2.78
	2022	158,459	554,072	28.60	
동구	2026	65,965	403,323	16.36	△2.25
	2022	58,601	314,808	18.61	
북구	2026	119,884	513,648	23.34	△1.23
	2022	107,740	438,509	24.57	
울주군	2026	349,888	1,133,772	30.86	△3.44
	2022	322,984	941,543	34.30	

☐ 울산광역시 및 구·군 2026년 자치법규 현황 (2026. 10. 1. 기준)

구분	자치법규(조례) 현황				비고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울산광역시	810	127	94	24	
중구	432	92	52	14	
남구	398	94	64	14	
동구	402	95	61	8	
북구	383	105	63	11	

※ 출처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 동구의회 상임위원회 운영현황(2026. 10. 1. 기준)

(단위 : 일)

위원회	계	의회운영위원회
년도별		
2026년	5	5

□ 동구의회 특별위원회 운영 현황(2026. 10. 1. 기준)

(단위 : 일)

위원회	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년도별			
2026년	4	3	1

□ 동구의회 회기 운영 현황(2026. 10. 1. 기준)

(단위 : 일)

구 분	회 기	일수	본회의차수
계		22	15
제233회 임시회	1. 28. ~ 2. 3.	7	5
제234회 임시회	3. 17.	1	1
제235회 임시회	7. 6.	1	1
제236회 임시회	7. 14. ~ 7. 22.	9	6
제237회 임시회	9. 1. ~ 9. 4.	4	2

□ 동구의회 연도별 주요 의정활동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회기일수	75	98	82	71
의원발의조례	7	27	24	32
5분자유발언	12	11	9	19
구정질문	-	2	1	2
행정사무감사 건수	187	198	183	149

□ 울산광역시 및 구·군 지자체 의정활동 실적(2025년 기준)

구분	회기일수(일)	의안* 발의건수		
		의원수(명)	의안발의건수(건)	1인당 의안발의건수(건)
울산시	105	22	106	4.8
중구	103	10	33	3.3
남구	97	14	50	3.6
동구	71	7	33	4.7
북구	96	9	34	3.8
울주군	100	10	40	4
울산 내 구·군 평균	94			3.8

* 의안: 의원 대표발의 건수 기준으로 작성(조례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등)

※ 울산 내 구·군 평균 산출방법: 울산 5개 구·군 내 의원수(50명) 대비 의안 발의 건수(190건)

- 산출식: 190건 ÷ 50명 ≒ 3.8건

□ 울산광역시 및 구·군 2023년 ~ 2026년 의정비 결정 현황

(단위: 만원)

구분	기간	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의정 활동비	2023년	연 1,800 (월 150)	연 1,320 (월 110)	연 1,320 (월 110)	연 1,320 (월 110)	연 1,320 (월 110)	연 1,320 (월 110)
	2024년 ~ 2026년	연 2,400 (월 200)	연 1,800 (월 150)	연 1,800 (월 150)	연 1,800 (월 150)	연 1,800 (월 150)	연 1,800 (월 150)
월정수당	2023년	연 4,070 (월 339.1)	연 2,909 (월 242.4)	연 3,247 (월 270.5)	연 2,778 (월 231.5)	연 2,829 (월 235.7)	연 2,928 (월 247.4)
	2024년	연 4,139 (월 344.9)	연 2,959 (월 246.5)	연 3,302 (월 275.1)	연 2,825 (월 235.4)	연 2,877 (월 239.7)	연 3,019 (월 251.6)
	2025년	연 4,243 (월 353.5)	연 3,033 (월 252.7)	연 3,384 (월 282)	연 2,895 (월 241.3)	연 2,949 (월 245.7)	연 3,095 (월 257.8)
	2026년	연 4,371 (월 364.1)	연 3,124 (월 260.3)	연 3,486 (월 290.5)	연 2,983 (월 248.5)	연 3,037 (월 253.1)	연 3,187 (월 265.6)

※ 2024년 ~ 2026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지급

□ 울산광역시 및 구·군 2026년 의정비 현황

(단위: 원 / 2026.10.1. 기준)

구분	총액(연)	의정비(월)	월정수당(월)	의정활동비(월)	순위
시	67,703,880	5,641,990	3,641,990	2,000,000	1
중구	49,235,400	4,102,950	2,602,950	1,500,000	4
남구	52,858,920	4,404,910	2,904,910	1,500,000	2
동구	47,823,120	3,985,260	2,485,260	1,500,000	6
북구	48,369,960	4,030,830	2,530,830	1,500,000	5
울주군	49,875,120	4,156,260	2,656,260	1,500,000	3

□ 비교 그룹별 2026년도 연간 의정비 연간 평균

(단위: 만원, 연)

구분	비교그룹	의정비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시·도 의회	특·광역시 (8개)	6,862	2,400	4,462
	도 (9개)	6,813	2,400	4,413
시·군·구의회	50만 이상시 (17개)	5,543	1,800	3,743
	50만 미만시 (25개)	4,798	1,800	2,998
	도농복합시 (33개)	4,574	1,795	2,779
	군 (82개)	4,292	1,798	2,494
	서울시 내 자치구 (25개)	5,455	1,800	3,655
	광역시 내 자치구 (44개)	4,850	1,753*	3,097

☞ 의정활동비 최대 정액금액(150만원)으로 계산 시 연 1,800만원

붙임 2

발표신청서

발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휴대전화)			

의정비(월정수당) 기준 금액에 대한 의견

■ 울산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결정한 의정비(월정수당) 기준 금액에 대한 의견 입장 (택 1)

찬성 ☐	반대 ☐
-----------------------------	-----------------------------

■ 개조식으로 의견 작성

▶
 ▶
 ▶
 ▶
 ▶

※ 실제 발표할 원고는 발표자 선정 후 2026. 10. 1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등**
- 수집·이용 목적 : 의정비 관련 공청회 발표 자격 확인 및 선정결과 통지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발표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제 출 처: (우 편)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3층 기획예산실
 (전자우편) iamjiny@korea.kr

☐ 제출기한: **10.13.(화)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2026. .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붙임 3

발표자 추천서

추 천 서						
추천 기관 (단체)	기 관 명		연 락 처			
	주 소	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휴대전화)		직 업 (경 력)	의정비 결정과 관련한 전문성·경험 등		
의정비(월정수당) 기준 금액에 대한 의견						
■ 울산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결정한 의정비(월정수당) 기준 금액에 대한 의견 발표 입장 (택 1) <table style="width: 100%;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top: 10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찬성 ☐</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반대 ☐</td> </tr> </table> ■ 개조식으로 의견 작성 ▶ ▶ ▶ ※ 실제 발표할 원고는 발표자 선정 후 별도 제출 요청					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등 2. 수집·이용 목적: 공청회 발표 자격 확인 및 선정 결과 통지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동의한 날로부터 1년간 보유·이용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발표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제 출 처: (우 편)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3층 기획예산실 (전자우편) iamjiny@korea.kr ○ 제출기한: 10.13.(화)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2026. .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4	의견제출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i>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i>
연 락 처 (휴대전화)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2026. 9. 29.) 잠정 결정 내용】 • 의정활동비(2027년 ~ 2030년): 연 18,000,000원(월 1,500,000원) • 2027년 월정수당: 연 29,823,120원 ➡ 연 34,296,580원 (2026년 대비 15% 인상) • 2028년~2030년 월정수당: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 • 연간 의정비: 약 4,782만원 ➡ 5,230만원	
잠정 결정에 대한 의견 (필수)	☐ 적정하다 ☐ 높다(인하 필요) ☐ 낮다(인상 필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수준	• 2027년 월정수당(2026년 연 29,823,120원 대비) ☐ () % 인상 ☐ 동결 ☐ () % 인하 • 2028년 ~ 2030년 월정수당 인상 방식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 +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 적정 ☐ 다른의견()
그 밖의 의견 (선택)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등 2. 수집·이용 목적 : 의정비 관련 주민의견 제출자격 확인 및 의견수렴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의견 수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제 출 처: (우 편)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3층 기획예산실 (전자우편) iamjiny@korea.kr ○ 제출기한: 10.13.(화)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2026. . . .

(서명 또는 인)